

- 2019년도 제1회 -  
**장흥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제1회 장흥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장흥군인사위원회위원장

**I.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시험방법	직 급	직 렬	직 류	선 발 예정인원	비 고
제1회 임 용 시 험	계			2개	13명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시 설	일반토목	10명	
				건 축	3명	

**II. 시험방법 및 일정**

1.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

나.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구 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고
9급	일반토목	3과목(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10:00~11:00(60분)
	건축	3과목(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10:00~11:00(60분)

※ 합격자 결정 : 과목당 4할,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성적순에 의거 선발 예정인원 범위내 합격자 결정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 2. 시험일정

시 험 공고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9.9.17. (화)	'19.10.1.(화) ~ 10.4.(금) / 3일간 (공휴일 제외)	필 기	'19.10.10.(목)	'19.10.19.(토)	'19.10.21.(월)
		면 접	'19.10.21(월)	'19.10.24(목)	'19.10.28(월)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장흥군 홈페이지  
(<http://www.jangheung.go.kr>) 고시/공고 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18세이상(2001.12.31. 이전출생자)

나. 거주지 제한 : **아래의 1)항과 2)항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  
어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다. 응시 자격요건(자격증.면허증 등)\***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 관련 [별표8]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시설	일반 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시설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소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자 및 해당 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예정자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은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하고, 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합격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해당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이 확실한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라. 응시결격사유 등(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추가합격자 선발의 경우에도 해당 시험의 최초 면접시험 최종일로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4. 응시원서 접수(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붙임2)을 출력하여 작성

나. 접수기간 : '19. 10. 1.(화) ~ '19. 10. 4.(금) / 3일간(공휴일제외)

다. 접수장소 : 장흥군청 총무과(4층)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1)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우(59328,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장흥군청) 총무과 행정팀

※ 우편접수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응시표 회송용 봉투를 함께 우편송부(회송용 봉투에는 등기우표 부착, 수신인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 마. 제출서류

1)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9급(5,000원)

· 방문접수 : 장흥군 수입증지 부착(군청 1층 종합민원과 구입)

· 우편접수 : 우체국 통상환증서

2)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병역사항과 주소이력 전체)

4) 이력서 1부(붙임2)

5) 자기소개서 1부(붙임3)

6) 자격조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4)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5)

8)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또는 자격취득 확인서 1부

9)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8), 9) 항목은 해당자만 제출

5. 가산점 적용 :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필기 시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취업지원 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5%,3%			
통신·정보 처리분야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8·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 ※ 자격증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舊)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됩니다.(舊 워드프로세서 2, 3급은 가점불가)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 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 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임용 예정기관)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선발 단위별 선발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 센터 ☎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 의사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 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2) 단,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선발예정기관)별로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의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선발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가산대상 자격증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자격증 사본 등을 원서 접수처에 FAX(061-860-0597)로 송부하고, 원서접수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자격증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대상 자격증 취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위의 '나'항과 '다'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 6.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마.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장흥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바.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전까지 장흥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 사.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 4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총무과 행정팀(061-860-0345)으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장흥군청 홈페이지(<http://www.jangheung.go.kr>) 채용공고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시험회수 및 시험명 ①, ⑮, ㉓...당해 시험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명칭을 기재할 것.
2. 출원자성명 ⑩, ⑯, ㉔... 정자로 기재하되, ⑩, ⑯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3. 주소 ②... 현재 거주하는 곳(번지, 통, 반 명기)을 기재할 것.
4. 경력 ④... 공무에 종사한 최종경력(군 경력도 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관서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5. 선택과목 ⑤...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개과목 이상인 경우 1, 2, 3으로 표시된 선택순서 표기에 따를 것.
6. 가산기표란 ⑥⑦... 6급이하의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그 자격 및 시행기관을 기재하거나 취업보호대상자의 해당표시(√표)를 할 것.

※ √표 대상자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7. 응시계급 ⑧, ⑬, ⑰... 응시하는 계급을 기재할 것.
9. 응시직렬 ⑨, ⑭, ㉕...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기재하고 ( )안에는 당해 직렬중 직류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응시직류까지 명기할 것.
10. 응시번호란...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에 기재하지 말 것.
11. 사진란 ⑱, ㉖...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 탈모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첨부할 것.
12. 우무인 ㉗... 시험시행일에 응시자로부터 우무인을 받으므로 출원시에는 찍지 말 것.

주 의 사 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 및 사진 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li> <li>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첨부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 지참 재교부 받아야 한다.</li> <li>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구만을 지참(휴대폰 등 지참불가)하여야 한다.</li> <li>4. 시험당일은 매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위 바른편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시관의 지시에 따르되, 동일한 색의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li> <li>6. 시험실내에서의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등은 일체 금하며, 일단 입실한 자는 당해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다.</li> <li>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시키고, 당해인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처분한다.</li> <li>8. 기타 자세한 것은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li> </ol>





(붙임 4)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장흥군에서 시행하는 2019년도 제1회 장흥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 )직렬 응시자로서, 학위 · 경력 ·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장흥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